

재취업 활동 방법 (2차부터 만료일까지)

- ※ **일반수급자**(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), **장기수급자**(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):
2~4차는 1회, 5~7차는 2회(1회는 구직활동 필수), *8차 이후는 1주 1회씩(구직활동만 가능)
- ※ **반복수급자**(5년간 3번 이상 수급한 자):
2~3차는 1회(구직활동만 가능), 4~7차는 2회(구직활동만 가능), *8차 이후는 1주 1회씩(구직활동만 가능)
- ※ (이직 당시)만 **60세 이상 또는 장애인**: 모든 회차마다 1회씩(재취업활동 방법은 선택 가능)
- ※ **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**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신청서,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팩스(0508-8230-0182) 송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실업급여→취업사실신고)에서 '취업사실 신고'하시기 바랍니다.

활동 방법		제출(첨부) 서류	기타
구 직 활 동	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	X	*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불가 * 허위 구직활동은 모니터링 대상
	인터넷을 통한 입사 지원 (사람인, 잡코리아, 인크루트 등)	1. 취업활동증명서 2. 입사지원사실 확인되는 화면 3. 채용공고+보낸편지함 중 선택	누가, 언제, 어떤 사업장에 입사 지원했는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
	구인 공고 있는 사업장	구인 공고+명함(서명)	
	구인 공고 없는 사업장	면접확인서+명함(서명)	
	우편을 통한 입사 지원	구인공고+등기우편영수증	
	직업훈련과정 참여 (내일배움카드)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	직업훈련 수강증명서 +출석부	3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은 구직활동 2회 인정
구 직 활 동 외 활 동	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, 시험 응시	수강증명서+출석부, 시험응시 확인서	* 온라인 강의는 불인정 * 어학, 취미 강의는 불인정
	오프라인 센터 취업특강 (취업지원팀 창구에서 예약접수) 집단상담 프로그램	참가 확인증 또는 수료증	횟수 제한(취업특강만은 3회) 동일강좌 중복수강은 불인정 -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횟수 제한 없음 (별도 안내시까지)
	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	X	
	워크넷 직업심리 검사	검사결과지	횟수 제한(1회) -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횟수 제한 없음 (별도 안내시까지)
	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	참여확인증	
	사회봉사활동 참여 1365자원봉사포털(www.1365.go.kr)	자원봉사활동 확인서	*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 가능 담당자가 인정한 봉사활동(1365등록된 활동)
	취업박람회 참여	참여확인증	
	일용근로 제공	X	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(단, 6차까지만 인정)
	자영업 준비활동	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	-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분(출석하여 인정) -다단계판매원,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채권추심원 학습지도사, 텔레마케터, 학원강사, 지입차주 등